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 202 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18년 10월 17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주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으로 함(안 제12조 제1항).
-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3조).

###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 상 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 나.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안 제11조)

- 서울시는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sup>1)</sup>
- 강남·북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대규모의 균형발전 사업을 자치구의 재정과 역할로만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특별회계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특히, 지역 간 재정여건, 경제·산업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의

---

1)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의 설치는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② 그 밖에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③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

고질적 불균형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집중 투자로 격차의 폭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수립과 재원 투입이 요구됨.

- 따라서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는 한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현재 5개 시·도 지역(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기금으로 운영하거나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부산, 세종, 전북). [별첨2 참조]

## 다. 특별회계의 재원 구성(안 제12조)

### (1) 세입구성

-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됨.

- 특별회계 운용기간(2019~2023) 중 총 세입규모는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00억원, ▷ 서울시비 중 과밀 부담금 1,600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5,400억원 등 모두 1조 2,900억원으로 전망됨.

〈 연차별 재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90,000	180,000	262,000	275,000	283,000	290,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0,000	80,000	120,000	125,000	130,000	135,000
과밀부담금	160,000	-	38,000	39,000	41,000	42,000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00	100,000	104,000	111,000	112,000	113,000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보조금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세,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sup>2)</sup>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서울시 균형발전 사업의 재원은 향후 5년간 약 5,9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번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임.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망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0,000	120,000	125,000	130,000	135,000

※ 2019년은 특별회계 설치 이후 추경예산부터 운용예정임.

나) 과밀부담금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유발시설을 신·증축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밀부담금<sup>3)</sup>의 서울시 귀속분(2018년)은 678억원이며, 이 중 50%를 세입 재원으로 특별회계에 활용하게 되면 향후 5년간 1,6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는 과밀부담금 세입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 50%, 도시재생기금에 50%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sup>4)</sup>의 과밀부담금 수입분 전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시킬 계획임.
- 정부 또한, 과밀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50%) 전액을 국가균형발전사업(지역자율계정의 세출)으로 보조하고 있는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건축비의 5~10%를 납부함.

4) 도시개발특별회계(1조 2751억원, '18년)는 주요 재원인 재산세 도시지역분(70%) 9,049억원(71.0%)이며, 과밀부담금 수입(339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임.

상황이므로,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균형발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한편, 과밀부담금은 2019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2020부터 세입 편성하기 위해 부칙으로 시행 경과 규정을 두었음.

〈 서울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50%) 전망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과밀부담금 (50%)	-	38,000	39,000	41,000	42,000

※ 2019년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어 미반영

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나 과밀부담금 수입 이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서울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를 보통세 징수액<sup>5)</sup>의 1% 이내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총 5,400억원의 전입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서울시 2018년 보통세징수액은 15조 1,883억 5,900만원(2019년 15조 8,599억 8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전망치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 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0,000	104,000	111,000	112,000	113,000

-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보통세 징수액 또는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1.5% ~ 5% 규모를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재원 징수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 지역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실행 기반을 자치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됨.
- 따라서 강남·북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구성

-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필요 사업비의 보조, 위탁사업비 지원, 지방채·차입금 등의 원리금상환,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해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sup>6)</sup> 확충사업을 포함해 법령에서 개별 특별회계로 규정된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지역균형발전 전체 사업은 모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임.
- 그러나, 비강남권 4개 도시철도(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와 광역철도사업, 주차장 건설 등 같은 대규모 도시인프라 구축사업과 세운상가·영등포 등 도시정비사업 등은 기존의 개별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중점 추진해오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시범적 실행사업들도 기존의 일반회계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격차해소의 실효성과 정책수행 결과의 시민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 사업의 무분별한 특별회계 전환을 막고 기존의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6) 생활서비스시설: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주민복지시설 보건소공원주차장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동부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범사업 편성(안) 〉

분야	사업 내용
교육 문화·돌봄 시설 확충	대학연계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 운영
	동북권 학교에 체육관 설치(29개) 및 공연전시공간(1개), 수영장(4개), 주차장(4개) 신축후 개방해 지역 거점공간화
	동북권 학교에 문화교실(108개) 및 IT 기반 학습환경 조성(120개)
	다양한 예술교육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설치
	청소년 아지트 조성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건립
	서울도서관 분원(5개) 설치, 비강남권 구립도서관 확충지원(20개)
	강북권 서울시 어린이 전문 병원 설치
	비강남지역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90% 이상 설치
	비강남지역에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 설치 (열린육아방 373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13조)

- 개정안은 시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2019~2023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제9조 제3항), 또한 5년 단위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태와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마. 기타 사항(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기타 부칙 사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과밀부담금이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됨에 따라, 시행시점에 맞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과밀부담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바. 종합의견

-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분야별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각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정 전반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이끌 수 있도록 개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격차발생 요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용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 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0조(과밀부담금의 특별회계 전입비율)**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 <참고자료 2> 시·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시·도	설치여부	설치근거	회계규모 (본예산)	재원구성	세출용도
1	서울	×	×	-	-	-
2	부산	×	기금 설치근거 있음	-	-	-
3	대구	×	×	-	-	-
4	인천	×	×	-	-	-
5	광주	×	×	-	-	-
6	대전	×	×	-	-	-
7	세종	×	특별회계 설치 근거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li> <li>▫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배정분의 10% 이내</li> <li>▫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사업비 지원</li> <li>▫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지원</li> <li>▫ 예비비 등</li> </ul>
8	울산	×	×	-	-	-
9	경기	○	특별회계 설치 강행규정	488 (219,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세 징수액의 1.5% 이내</li> <li>▫ 생활기반계정 도 배정분의 5% 이내의 보조금</li> <li>▫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사업비 지원</li> <li>▫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지원</li> <li>▫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사업</li> </ul>
10	강원	×	×	-	-	-
11	충북	○	특별회계 설치 강행규정	324 (41,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li> <li>▫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 이상</li> <li>▫ 타 회계 전입금, 차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 사업비 지원</li> <li>▫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지원</li> <li>▫ 예비비 등</li> </ul>
12	충남	○	특별회계 설치 강행규정	402 (51,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배정분 10% 이내</li> <li>▫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발전사업 필요 사업비 지원</li> <li>▫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li> <li>▫ 예비비 등</li> </ul>
13	전북	기금	기금 설치 강 행규정	18 (운용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납부</li> <li>▫ 지방채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li> <li>▫ 혁신도시 내 징수된 도세 일부</li> <li>▫ 전라북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li> <li>▫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시책사업</li> <li>▫ 기반시설 지원사업</li> <li>▫ 시군의 교육문화기반조성 등</li> <li>▫ 기금 운용 부대경비</li> <li>▫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사업</li> </ul>
14	전남	×	×	-	-	-
15	경북	×	×	-	-	-
16	경남	○	특별회계 설치 강행규정	137 (72,7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배정분 10% 이내</li> <li>▫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 관련 경상경비, 사업비 지원</li> <li>▫ 위탁사업비 지원</li> </ul>
17	제주	○	특별회계 설치 강행규정	71 (50,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계 등 전입금</li> <li>▫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li> <li>▫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50% 이내</li> <li>▫ 시금고 협력사업비 50%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 관련 경상경비, 사업비 지원</li> <li>▫ 위탁사업비 지원</li> </ul>

## 〈참고자료 3〉 관련 시·도 조례 발췌

###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원의 확보) ①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2.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
3.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사용은 해당 조례가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재원의 확보) 도시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2.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4.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 ■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
2.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의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4. 예비비 등

## ■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재원의 확보) 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2.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3.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도 배정분의 100분의 5 이내의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수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4.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4. 예비비 등

##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 어서지 아니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로 하며, 필요 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2.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
3. 전라북도 출연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전라북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
2.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반시설 지원 사업
4. 각 시·군의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 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다만, 동법제 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4. 예비비 등